부동산공시법	오늘의 자가진단	교수: 박정환
	제5장 등기절차각론(권리에 관한 각칙등기)	과정: 기본이론(8주차)

- 1.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, 그 등기원인에 분할금지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.(0, X)
- 2. 등기부 갑구의 등기사항 중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,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.(0, X)
- 3.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는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.(0, X)
- 4. 1동의 건물을 횡단적으로 구분한 경우에 상층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.(0, X)
- 5.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,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역 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.(0, X)
- 6.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. (0, X)
- 7.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.(0, X)
- 8.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에 기초하여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.(0, X)
- 9. 등기관은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액을 반드시 등기기록에 기록하여 야 한다.(0, X)
- 10.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채권자의 지위가 전부 양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등기 원인을 계약양도로 기록한다.(0, X)
- 11.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이면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.(0, X)
- 12. 등기관은 동일한 채권에 관해 2개이상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.(0, X)
- 13.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신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.(0, X)
- 14. 신탁등기시 수탁자가 甲과 乙인 경우,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甲과 乙의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.(0, X)
- 15. 부동산물권이 아닌 부동산임차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는 할 수 없다.(0, X)
- 16.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. (0, X)
- 17.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.(0, X)
- 18.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을구에 한다.(0, X)
- 19. 甲이 乙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후 乙이 그 토지를 丙에게 양도한 경우, 甲의 본등기청구의 상대방은 丙이다.(0, X)
- 20.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처분등기가 된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하지 못한다. (0, X)
- [정답] 1.O 2.O 3.O 4.X 5.X 6.X 7.X 8.X 9.X 10.O 11.X 12.X 13.X 14.O 15.X 16.O 17.X 18.O 19.X 20.X